

違憲性 技術用役育成法 改正試案을 論駁한다

(A Storm protest for Revised bill proposal of
Disconstitutional Engineering Services Promotion Law)

金 峴 根*

Kim, Suen Kun

〈목 차〉

- 1. 머리말
- 2. 科技處와 (社)韓國技術用役協會
行政實務當事者의 (立)法常識未洽痛駁하다.
- 3. 憲裁(88年 9月設置된)의 違憲處理主要事例
- 4. 技術用役育成法 및 改正試案의 違憲性主張과
技術士 資格과 業務의 單一綜合立法主張
- 5. 맺는말
- 6. 主要參考資料目錄
- 7. 附錄-I : 新任金鎮炫科技處長官에게
보내는 公開質問書
附錄 II : 國家技術士立法草案에 關한
設問가드案

1. 머리말

本文은 本紙 1990年 8月號(Vol, 23, No. 4)에 掲載된 「技術士業務關聯現行法規의 違法條項에 關하여」의 第一彈에 이어서 後續 第二彈으로 쓴 것이다. 尙后, 單一立法進行行政措置에 關한 憲裁判決確定時(必要時)까지 繼續해서 第三彈~第N彈으로 投稿될 것이다.

羊頭狗肉과 같고, 過去 1.9年마다 朝令暮改하였든 技術用役育成法의 改正試案이 「엔지니어링 振興法」으로 遁갑(遁甲)한데 대하여 驚歎을 禁할 수 없어서 筆舌로 위선 痛駁코저 한다.

痛駁對象은 첫째로 “科學技術과 産業間連繫強化를 위한 技術諮問 및 設計擔當組織(CEDO)의 育成方案”(1990. 9. 科學技術處)과 둘째로, “標題는 技術用役育成法改正案試案(1990. 10.

科學技術處(技術政策室)으로 되어 있으나 實內容은 「엔지니어링 振興法(全文第 34條와 附則 2個項으로 構成됨)」으로 된 것을 主로 問題삼는다.

2. 科技處와 (社)韓國技術用役協會(用協이라 呼稱함) 行政實務當事者의 立法常識未洽을 痛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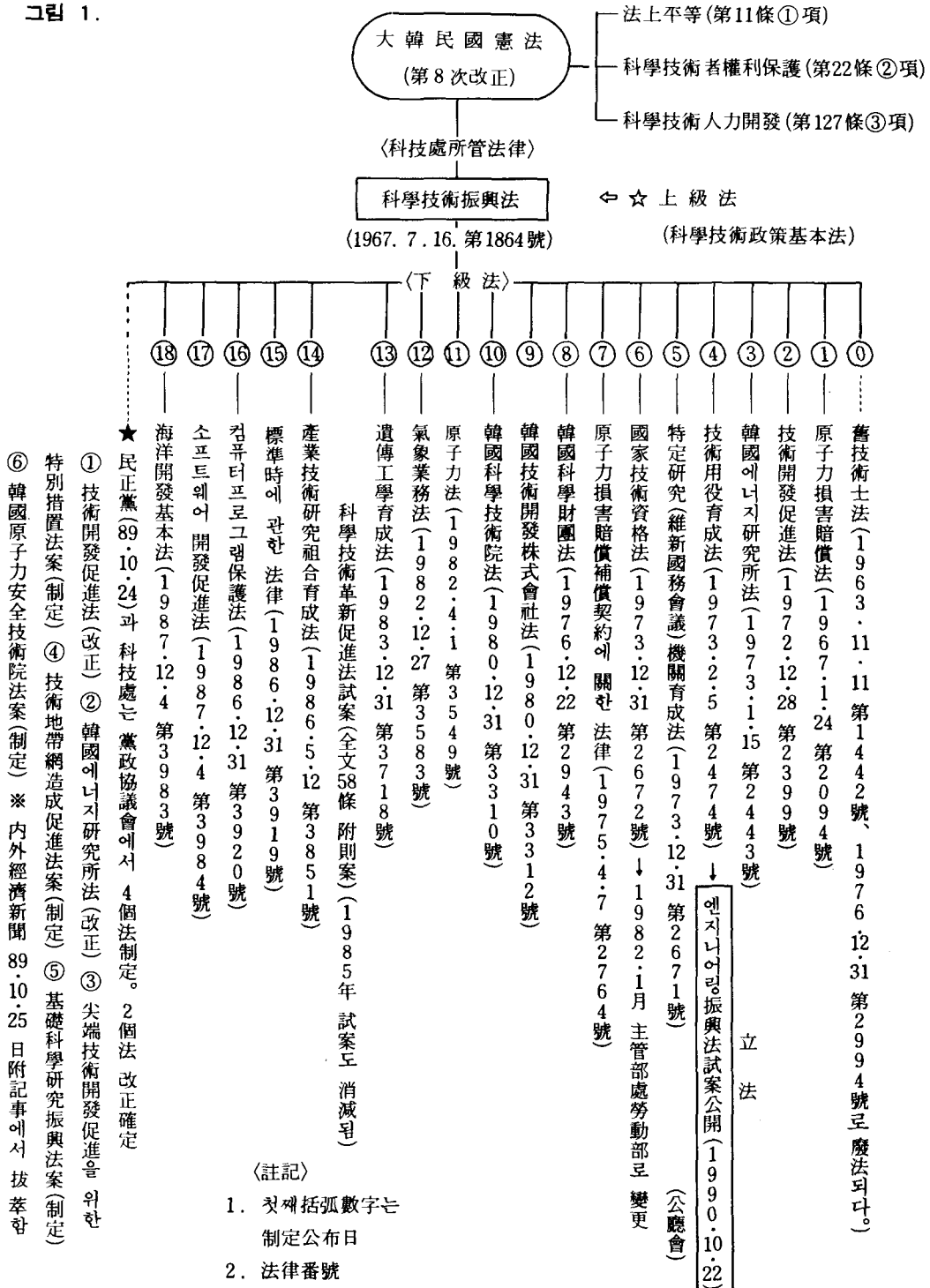
2.1 一貫된 立法常識未洽事例

(1) 科技處所管法律(圖-1 要參照)

別添圖-1 과 같이 筆者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科技處는 所管實定法 17個, 廢法된 (舊)技術士法 및 勞動部로 1982年 1月에 移管된 法까지 19個 法案을 立案·制定公布하여 運用해 왔고, 1985年에는 “科學技術革新促進法試案”(全文 58條와 附則 3條로 構成된 것임)이 立法企圖되다가

土木技術士 (港灣 및 海岸) (社)韓國技術士會技術士立法推進特委 幹事(先任)

그림 1.



消滅된 일이 있었다. 또, 最近에는(新聞報道資料) 1989年 10月 24日 民正黨과 科技處는 黨政協議會에서 4個法을 立法制定하기로 하고 2個의 實定法은 改正하기로 確定진바 있었다.(※(社) 韓國技術士會는 國家技術士法立法推進을 公式的으로 推進함에 있어서 筆者가 그 草案을 研究用役으로 1985年에 作成提出한 바 있었으나, 其間 科技處의 玄關門에도 入門을 하지 못했고 政府施策에도 들지 못해왔다.)

그러나, 全體 技術士 5,486名(1990. 3. 25 現在)의 技術士法立法推進要求의 아우성도 아랑곳없이 馬耳東風·牛耳讀經格으로 偏心忌避現象化한 非民主的處事와 함께 民主化바람에 逆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여기서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科技處所管法中 原子力法(1982. 4. 1. 制定公布. 法第 3549號: 全文 122條와 附則 5條로 構成됨)은 原子力利用 關聯業務와 資格(免許)이 統合된 單一法이라는 것을 科技處나 用協實務者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2) 原子力法の 概要

이 實定(存)法中 本文에서만 必要한 것만 拔萃해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第1條(目的) 이 법은 原子力의 研究·開發·生産·利用(이하 “原子力利用”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術의 進歩와 産業의 振興을 促進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向上과 福祉增進에 寄與하며, 放射線에 의한 災害의 防止와 公共의 安全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6條(原子力爐操縱責任者의 選任) ① 發電用 原子力爐 運營者는 原子力爐의 運轉에 관한 監督을 하게 하기 위하여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原子力爐 操縱監督者 免許를 받은 者 중에서 原子力爐 操縱責任者를 選任하여 原子力爐 運轉 開始前에 科學技術 處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以下省略)

第50條(核燃料物質取扱責任者의 選任 등) ① 核燃料 週期事業者(…)는……核燃料物質取扱者의 免許를 받은 者 중에서 核燃料物質取扱責任者를 選任하여 核燃料物質取扱開始前에 科學技術

處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以下省略)

第72條(放射線安全管理責任者의 選任 등)……(以下省略)

第91條(免許) ① 原子力爐의 運轉이나 核燃料物質·放射性同位元素 또는 放射線發生裝置의 取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 處長官의 면허를 받은 者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以下省略)

第94條(免許試驗) ①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 處長官이 施行하는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以下省略)

第105條(教育訓練) ① 原子力關係事業者는 從業員중 原子力關係施設에 從事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子力利用에 따르는 安全性 確保에 必要한 教育 및 訓練을 實施하여야 한다.(……以下省略)

위와 같이 이 統合單一法에서는 資格試驗을 통한 免許가 없으면 原子力利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技術士法立法草案에는 衡平의 原則이 反映되어야 한다는 것을 再次 銘記하지 않을 수 없다.

(3) 科技處의 技術士制度檢討(90年度) 및 其他關聯會議資料內容의 傾向檢討:

檢討對象을 날자順으로 적으면 첫째, 科學技術 處 招請會議資料(技術政策室長主宰), 1990. 1. 24. 題目 技術士制度檢討會議開催 둘째, 科學技術 處 招請崔次官主宰會議(1990. 4. 20. 題目 엔지니어링 産業育成을 위한 懸案課題), 셋째, 技術用 役育成法施行規則改定令案, 1990. 6. 16일자로 公告된 諸內容等이다.

첫째內容의 骨格은 다음과 같이 한글로만 된 것을 그대로 轉載한다.

〈첫째 內容의 主要指摘事項要約〉(i) 法未備是認 (ii) 技術士需給調節의 (制度的) 未備是認, (iii) 兩側의 合議不能時 議員立法推進計劃* (資料에 明示함)으로 되어 있으나, 技術士會은 單一統合法으로 立法推進이 保障되지 않는限, 憲裁의 判決로 受取할 意向을 가진 會員이 絶對

多數라는 것을 當事者는 認知하시기 바란다.

〈轉載資料〉

§ 技術士制度檢討(1990. 1. 24 會議資料)

I. 現行 技術士制度的 問題點(MOST)

○ 體制面

- 技術士의 資格檢定 등 主務部處의 多元化로 一貫的인 技術士 需給調節이 未備(主務部處 : 科學技術處, 建設部, 勞動部, 內務部, 農林水産部, 商工部, 動力資源部)
- 대부분의 技術士의 主務部處는 科學技術處나, 現行法上 勞動部가 法 運營總括部署로 되어있어 科學技術處가 主導的으로 技術士를 管理, 育成하기가 곤란

○ 內容面

- 高度 産業社會의 主導的 役군으로서 技術者의 最高資格인 技術士를 技士, 技能士와 같이 管理함으로서 技術士의 긍지 손상
- 技術士의 주된 業務內容인 技術用役業務가 技術士 主導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89 말 현재 5,486 명)
예) 辯護士法上의 法務法人, 藥師法上의 藥局開設登錄 등
- 技術士 需給調整, 育成, 活用政策 수립의 法的根據 未備
- 技術士의 權益保護와 資質向上, 檢定·登錄, 効率的 保守教育 등을 전담할 技術士會의 法的根據 不在
- 技術士 種目이 21個分野 104個 種目으로 지나치게 細分化 되어
 - 隣接分野間 技術士 相互活用이 제약되고
 - 유사한 種目間의 業務領域에 따른 충돌
 - 檢定施行·補修教育, 사후관리의 번잡성 야기

II. 改善方案

1. 基本方向

- 現行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해 技士·技能士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技術士의 檢定·管理를 獨立法에 의해 科學技術處가 一括 運營하고
- 技術士의 固有業務 範圍의 設定, 權益保護 등에 관한 規定을 補完

2. 技術士法 制定의 必要性

- 다가오는 後期産業社會 또는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技術用役産業은 知識集約的이고 高附加價值産業으로서, 經驗과 知識을 겸비한 技術士의 主導的 役割이 必要함.
- 따라서 未來 技術主導社會에 대비, 現行 技術士制度 運營의 一元化를 통하여 技術士의 적극적인 育成·活용이 필요함

III. 法 制定方案

〈第1案〉 韓國技術士會 提案(草案)

主要内容

- 現行 國家技術資格法上의 種目區分, 資格取得, 檢定, 補修教育, 登錄, 罰則 등에 관한 규정을 拔萃·補完
- 技術士 人力管理 基本計劃 作成 義務規定 新設
- 技術士 業務의 定義와 遂行方法 등의 補強 (技術士補制度 導入)
- 技術士 위주의 技術用役 行爲 根據 마련
 - 技術法人 및 技術士 事務所에 의한 營業行爲 및 認可·登錄制度 新設
- 技術士管理委員會, 韓國技術士會에 관한 規定

長·短點 比較

○ 長點

- 技術士資格制度를 獨立法에 의하여 科學技術處가 一括運用 함으로써, 効率的이고 一括的인 制度管理
- 技術士 위주의 技術用役行爲의 근거 마련
- 技術士補制度의 導入으로 젊고 有能한 技術士를 활용하고, 技術士 수요부족 해소
- 技術士管理委員會의 新設과 韓國技術士會의 法的根據를 마련함으로써, 技術士 人力管理 (檢定·教育 등) 強化 및 技術士 保護 및 育成 圖謀

○ 短點

-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用役業者의 營業行爲와 技術士의 營業行爲(技術士 事務所, 技術法人)가 사실상 동일하여 技術用役育成法과 抵觸

특히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해서도 技術士가 代表者가 되어 用役業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技術法人 設立은 認可制를 提案하고 있으나, 이는 技術用役育成法에서는 登錄制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技術士法에 의한 認可를 받기가 더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기술법인 규정의 실익이 미약함

※別添 1: 法 主要內容 比較表(技術士會 作成法 草案, 國家技術資格法,

技術用役育成法)

※別添 2: 韓國技術士會 作成法 草案 構成 (생략)

〈第2案〉第1案에서 技術士 위주의 用役行爲에 관한 登錄·認可制 削除하고, 技術士의 種類別 業務範圍에 관한 內容을 規程 (MOST)

主要內容

○現行 技術資格法上 技術士 關聯事項(種目 區

〈첫째內容의 별첨-1〉

법 주요내용 비교표

항 목	기술사회 제안법(안)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용역육성법	비 고
기술사 및 기술 사업부의 정의	○기술사: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 ○기술사업부: 과학기술에 관한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계획, 조사, 연구, 분석……	○규정 없음	○기술용역의 정의가 기술사업부의 정의와 유사함	
과학기술부문 및 종목	○부문 및 종목의 구분기준 규정	○구분기준 없이 부문 및 종목 규정	-	
기술사 인력관리	○과학기술처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규정 없음	-	
시험 관리	○기술사 시험을 2개 종류로 구분 (기술사, 기술사보) ○과학기술처에서 주관	○1개 종류의 기술사 시험 ○주무부처(7개)에서 주관	-	
합격증 교부	○과기처 장관이 교부	○주무부처 장관이 임의교부	-	
기술사 업무	○기술사사무소(1인 또는 합동)의 개설시 과기처에 등록 ○기술법인(기술사가 대표가 되는 대규모 기술사업부 수행) 설립시 과기처 인가	-	○개인기술용역업과 유사한 종류 ○산업설비, 종합건설 기술, 전문기술용역업과 유사 (※동 법은 등록제임)	○등록제보다 인가제의 경우 설립이 어려운 경향임
기술사관리위원회	○기술사 시험, 기술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후관리, 인력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과학기술계, 기술사중 원로	○기술자격제도 심의위원회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관계정부부처 직원	-	
한국기술사회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업부 개선 발전 도모 ○공제사업, 기금운영, 기술사연수	○규정 없음	○용역업자의 품위보전, 용역기술의 향상, 발전도모를 위해 용역협회 설립	○기술사회와 용역협회의 업무 일부 중복

分, 資格取得, 檢定, 登錄 등)에 대한 規程을 拔萃·補完

- 技術士報 制度의 導入
- 技術士 業務에 대한 定義, 種類 및 範圍에 대한 規定 新設
- 技術士管理委員會, 韓國技術士會의 設置 및 技能에 관한 規程

長·短點 比較

- 長點
 - 技術士 資格制度를 科學技術處가 일원화 하여 효율적 관리
 - 技術士報 制度의 導入
 - 技術士管理委員會와 韓國技術士會의 設立根 據를 마련함으로써 技術士 人力管理 強化 및 技術士 保護 및 育成 圖謀
 - 技術用役育成法과 저촉되지 않음
- 短點
 - 技術士 위주의 技術用役行爲 근거규정이 없어 技術士가 현재와 같이 기술용역업자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머무를 우려가 있음

IV. 向後 推進計劃

- 금년중 양 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후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으로 추진
 - 둘째內容의 骨格도 亦是 한글로 된 것을 技萃 해서 그대로 轉載한다.

〈둘째內容의 主要指摘事項要約〉(i) 엔지니어링産業이라는 日本式用語를 美辭麗句로 使用한 日帝植民地殘滓가 濃厚한 듯한 印象을 풍기고 있다.(要參照, 資料一 別添) (ii) 技術用役業登錄制度和 技術用役登錄基準과 技術士制度에 焦點을 두고 있다. (iii) 엔지니어링 産業育成長期課題속에서 技術用役育成法을 改正試圖하고 있었다.

資料一 「엔지니어링産業에 관한 主要參考文獻目錄(註付)」By S. G. Kim

A. 日本

- A.1.) 「エンジニアリング産業一構造と經營戰略」 苦杉敬明·高仲日出男著 東京大學出版會發刊(311面)

註記(はしかき) "엔지니어링이라 함은 本質적으로 大規模적인 技術集約的인 시스템을 構築하는 機能이다. 즉, 産業·社會의 變化·進歩에 따라 생기는 各種課題를 解決하는데 必要로 하는 巨大한 技術시스템을 構築하는 機能이라고 定義한다. 이 機能은 비지니스로서 擔當하는 것이 Engineering 産業이다.

- A.2.) 「プロジェクト・マネジメント用語辭典」 509面

註記: 4P, "Engineering 産業이라 함은 (財)日本 엔지니어링振興協會(ENAA)의 定義에 依하여, 「Engineering 이라는 活動을 對價의 對象으로서 提供하는 産業을 總稱하는 것」이고 日本國特有的인 表現으로 美國에서는 Engineering 企業은 建設業의 一種으로 되어, 建設産業(Construction Industry) 自體가 Engineering 産業도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A.3.) 「エンジニアリングおよびエンジニアリング産業に關する調査研究事業・その1 엔지니어링産業における經營·財務本質의 國際比較」 昭和 60年(1985年) 3月, (財)ENAA 發刊, ENAA-1984-情(130面)

- A.4.) 「エンジニアリングおよびエンジニアリング産業に關する調査研究事業・その2 韓國 엔지니어링産業의 實態ヒ動向」 ENAA- 1986-情2(87面)

- 參考: 1) (財)엔지니어링振興協會(ENAA : Engineering Advancedneut Association of Japan), 1978年 8月 設立, 通商産業省關聯團體, 會員 約 140社, PMI, INTERNET와 協力協定締結
- 2) (社)海外コンサルティング企業協會 (ECFA: Engineering Consulting Firms Association, Japan) 1964年 4月 設立, 通商産業省關聯團體
- 3) (社)國際建設技術協會(IECA, 國連協): International Engineering

Consultants Association, 1956年 9月
設立, 建設省關聯團體

<둘째內容의 轉載資料>(紙面關係로 要約分)

○주요 토의사항(둘째內容上)

〈현안과제〉	주요 토의 과제
가. 기술용역업 등록제도	① 「등록제」의 장·단점 및 실효성 있는 방안 ② 기술용역업종 및 전문분야의 합리적 조정
나. 기술용역업 등록기준과 기술사 제도(轉載省略)	① 등록기준(기술사 확보등) 개선 방안 ② 기술사 공급확대를 위한 자격제도
다.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장기과제	① 엔지니어링업무의 수요 창출(주계약제도, 외국용역발주 등) ② 기술능력 제고(기술개발, 계약제도 개선 등) ③ 해외진출 촉진(기술인력 공동활용, 해외진출 지원제도 등) ④ CEDO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진흥센터 설립」 등

가. 技術用役業 登錄制度

(1) 「登錄制」의 長·短點 및 實効性 있는 方案
<現況>

- 年 1回 이상, 登錄期間중 科學技術處에 登錄—登錄된 業者만 技術用役業을 수행할 수 있음
- 外國人 投資會社의 경우에는 尙제라도 登錄可能

○年度別 業體數

'77	'80	'83	'86	'87	'88	'89	'90
111	194	201	306	327	391	451	570*

※今年 3월말 신청분이 모두 등록될 시

※業體數는 전년대비 年間 17%씩 증가(受注額은 20~30%씩 增加)

註記: 技術用役業體就業率(表-1 要參照)과 技術士의 年間所得을 考慮하여야 한다.

기술용역등록제도(MOST)

장 점	단 점
○기술용역의 수요창출 확대	○신규업체 참여제한등 산업의 자유경쟁 저해
○기술용역 성과품(산업 시설물)의 질적 향상	○기술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력 스카웃 부조리 발생
○고급기술인력(특히 기술사)의 활용	○민간수요증대에 따른 무등록업체 생성
○기술용역 수요자에 대한 공시효과 제공	○수행업무범위의 불명확에 따른 민원발생
○기술용역산업의 형성과 발전계기 마련 등	

<問題點>

- 登錄期間 制限, 技術士 保有의 義務化등 경직된 技術用役業 登錄制 실시로 新規創業 곤란
- 製造·建設業의 急成長 및 勤務條件이 좋은 大學, 研究機關, 政府投資機關에 능력있는

表-1: 分野別, 年度別('82, '84, '86, '88, '90) 技術用役業體技術士就業現況(SGK)

年度別 人員數및率	'82			'84			'86			'88			'90		
	就業者④	總數⑤	就業率(%)	A	B	A/B (%)	A	B	A/B (%)	A	B	A/B (%)	A	B	A/B (%)
土木技術士*	143	340	43.05	231	377	61.27	231	418	55.26	277	465	59.57	355	574	61.85
建築技術士*	23	76	30.26	44	88	50.00	34	117	29.05	56	159	35.22	119	199	59.80
國土開發技術士	28	74	37.84	28	74	37.84	44	84	52.38	49	104	47.12	69	142	48.59
平均(%)			36.72			49.70			45.56			47.30			56.75

出處: 韓國技術士會名簿에 의함

※施工技術者는 除外함

88年度 低就業率現況

金屬 電子 에너지土木 生産管理
18.97% 22.22% 14.29% 20.00%

- 高級技術人力 집중
 - 新規登録後 登録基準 未達業體 續出과 技術士 需給不均衡에 따른 技術士 스카웃 등 副作用 增大 (특히 情報處理, 電氣通信分野 등 7개 分野)
- 엔지니어링 기술의 민간수요 증대에 따른 무등록 업체 증가
 - 行政能力 限界로 業體管理 곤란
- 수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와의 불균형
 - ※ 우리나라와 같이 一括的 登録制를 실시하는 先進國의 例는 없음. (日本의 경우는 各 事業法에 部門別로 技術士 活用制 導入)
- 〈討議事項〉
- 登録制度의 존치여부
 - 許可制로 強化 / 申告制로 緩和 / 完全 自由化
 - ※ 申告制 및 自由化 導入시 適正時期
- 技術用役業 登録制를 계속 유지할 경우 登録申請 期間의 設定
 - 隨時 登録 / 年 1回 登録 (현행) / 分岐別 登録 / 격년제
 - 業種別 또는 專門分野別 相異한 登録期間 公告
- 一定期間別 再登録制 實施與否 및 再登録期間 設定
- 技術用役業 登録管理의 委託에 관한 사항
 - 韓國 技術用役協會 / 地方自治團體에 委任
- 엔지니어링 능력있는 「他産業業體」를 「技術用役業界」로 유인 방안
 - 다.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장기과제
- 〈討議課題〉
- 엔지니어링 업무의 需要創出 · 造成
 - 主契約者 및 外國用役發注制度 改善
 - 엔지니어링 업무 發注시 사전 公示制 導入 方案 등
- 엔지니어링 技術能力 提高 促進
 - 基本設計 등 핵심 엔지니어링 技術開發 促進 方案
 - 技術用役契約制度 改善 方案 등

- 海外進出 促進 支援
 - 엔지니어링 산업 海外進出時 支援制度의 改善 方案
 - 技術人力의 共同活用制 (Manpower Pool System) 導入 方案
- 民間主導의 엔지니어링 育成을 통한 CEDO 技能強化를 위한 「엔지니어링 진흥센터」 設立 · 運營 方案
 - 設立의 妥當性, 機能, 設立 方案, 財源充當 方法 등
 - ※ 上記 事項은 政府의 確定된 方針이 아니며 討議課題로 提示한 事項임
 - ※ 其他 엔지니어링 産業 育成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制度改善에 最大한 반영 노력
- 셋째 內容의 骨格도 亦是 前者와 같이 한글로 된 것을 紙面關係로 拔萃해서 그대로 轉載한다. 〈셋째 內容의 主要指摘事項〉 (i) 違憲性條項인 高級技術者 (非法定用語)*의 定義가 附表에 그대로 殘存해 있다. (ii) 現行 「産業設備用役審議委員會」의 名稱을 「엔지니어링 技術向上委員會」로 變更하고 同時에 審議事項을 調整함. (iii) 技術用役業者는 各種設計圖書 및 報告書等을 用協에 提出토록 함 等이다.
- 〈셋째 內容: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中 改定令案 (과기처) (1990. 6. 16)
- 개정 사유
 - 엔지니어링 産業의 健全한 育成 · 支援을 위하여 技術用役業 登録基準 改善과 外國用役發注 承認 節次 簡素化 등을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技術用役業中 專門技術用役業 및 個人技術用役業의 技術部門 및 專門分野에 「交通」을 追加함. (案 第3條 第4項 “別表 3”)
 - 技術用役의 登録基準중 技術人力은 高級技術者와 技術者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에 대한 구성범위는 科學技術處長官이 정하도록

록 함.(案 第5條 第1項 “別表 4”)

-大型用役 또는 2種 이상의 技術이 複合된 用役을 2이상의 用役業者가 聯合用役業體를 形成·遂行코자 할 때 科學技術處長官 承認 節次를 생략함.(案 第10條 第2項 삭제)

-技術用役業者는 각종 設計圖書 및 報告書 등을 韓國技術用役協會의 長에게 提出토록 함.(案 改正案 第11條 第2項 및 第3項 新設)

-外國用役發注承認時 檢討事項을 생략하고 승인할 수 있는 對象을 現行 美合衆國 通貨 10만달러 미만에서 50만달러 미만(韓國技術用役協會의 推薦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달러 미만)로 함.(案 第14條 第1項)

-現行 「産業設備用役審議委員會」의 名稱을 「엔지니어링 技術向上委員會」로 變更하고 審議事項을 調整함.(案 第21條)

○參考事項(省略)

大統領令 第 號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中改定令(案)(1990. 6. 16 公告)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中 다음과 같이 改定한다.

第10條 第2項은 削除하고, 第1項을 表示하지 않는다.

第11條를 第1項으로 하고 第2項과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用役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高級技術者의 署名捺印된 각종 설계도서 및 보고서 1부를 韓國技術用役協會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할 각종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의 對象 및 活用に 관한 事項은 韓國技術用役協會의 長이 訂하여 公告한다.

第12條 第1項 第6號에 “其他”를 削除하고,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7. 其他 科學技術處長官이 用役業務의 性質과 國內用役業者의 遂行能力을 고려하여 國內用役業者를 主契約者 또는 事業管理代行者

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用役事業

第14條 第1項 但書중 “用役代價가 美合衆國 通貨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用役代價가 美合衆國 通貨 5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0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韓國技術用役協會의 長의 推薦이 있는 경우”로 한다.

第16條 第1項中 “用役業者의 技術能力, 經營能力, 用役實績 및 資產規模”를 技術人力의 構成, 用役實績 및 資產規模”로 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엔지니어링 技術向上委員會의 設置) 엔지니어링 技術向上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에 엔지니어링 技術向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1條 第2項을 削除하고,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審議事項) 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審議한다.

- ① 엔지니어링 技術向上을 위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制度改善에 관한 사항
- ② 産業設備用役의 國產化 施策促進에 관한 사항
- ③ 엔지니어링 技術人力의 養成·供給에 관한 사항
- ④ 技術用役業體의 海外進出 促進에 관한 사항
- ⑤ 새로운 技術部門의 엔지니어링 産業 創業支援에 관한 사항
- ⑥ 其他 科學技術處長官이 부의하는 사항

第22條 第2項중 “環境廳”을 “環境處”로 한다. 別表 3中 技術部門 및 專門分野에 “交通”을 각각 追加하고 別表 4를 別紙와 같이 改正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1년 3월 31일까지 令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따라 技術人力을 追加 確保하여

야 한다.

註記：技術用役育成法施行規則改定令案은 省略
함

(4) 科學技術과 産業間連繫強化를 위한 技術諮
問 및 設計擔當組織(CEDO)의 育成方案

〈指摘事項〉(i) 技術用役業體의 登錄制때문
에 關聯組織이 脆弱(취약), 機能未洽과 學界,
研究團體, 學界間의 相互連繫가 未洽하다고 하였
으나, 政府施策의 貧困과 民主法治主義下의 法的
및 社會的 基盤이 아직도 後進國 或은 開發途上
國에 屬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마치 高級科學
및 技術人力*의 需給不均衡을 登錄制때문에
拘束된 것으로 誘導하고 있다. (ii) 技術用役
및 컨설팅에 관한 官民地方自治團體發注豫算執
行이 先進國처럼(需給以上으로) 豊富하면 自然
發生的으로 發展된다는 先進國의 事例를 採
吟味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技術用役業界 特히 여기
에 從事하는 技術士의 登錄制 잘못 만으로 誤認
하고 있다. 그 一例로서 日本은 技術用役育成法
없어도 잘되는 理由 또는 첫째 그 社會가 法的·
經濟的·社會的·事業零圍氣가 先進化·高度化
되었기에 現在까지 立法制度公布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研究分析檢討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拔萃된 題目의 內容(1990. 10. 22 公聽會
附議案件)을 轉載한다.

〈科學技術과 産業間連繫強化를 위한 技術諮
問 및 設計擔當組織(CEDO)의 育成方案〉(技萃分
：1990. 9. MOST)

I. CEDO 育成의 必要性

國內·外 科學技術與件은

- 對外的으로는 東西間 理念對決이 탈색되면서
「첨단과학기술을 둘러싼 摩擦과 壓力」이 加速
化되고
- 예) UR 등을 통한 知的所有權 保護強化, EC
의 技術研究共同體 形成 등
- 對外的으로는 製造業을 중심으로 國際競爭力
이 약화되면서 「科學技術革新에 基盤을 둔
産業構造調整 努力」이 시급한 實情
-특히, 페르샤만사태로 인한 國內物價上昇,
景氣沈滯 극복을 위한 技術開發緊要

우리의 現實은

- 科學技術의 總體의 水準面에서
-반도체등 特定 尖端分野 및 生産技術은 先進
國 水準에 接近하였으나, 기본설계·엔지니
어링 등 核心技術과 基礎科學은 크게 落後
- 科學技術開發諮問面에서
-研究開發資：88년 32억불(世界 13位), 研究
開發人力：88년 57천명(世界 13位)

따라서

- 國內·外 科學技術與件을 勘案, 한정된 資源의
國家發展 目標指向의인 結集·活用을 追究해
나가면서,
 - 相對的으로 脆弱한 설계·엔지니어링技術의
育成·發展을 통한 科學技術革新 全週期的
均衡發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技術諮問 및 用役設計擔當組織」
(CEDO)의 體系的인 育成·發展이 時急한
課題로 擡頭

IV. 現況 및 問題點

〈社會的 環境面〉

- CEDO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의 未洽으로
-成果品의 質을 左右하는 技術은 全體 費用의
過小로 輕視
- 契約制度가 技術爲主가 아닌 價格爲主로
시행
- 研究所 設立은 급증한 반면, CEDO 專擔組
織의 設置·運營은 미흡
- 外國技術導入 過程에서 工場建設, 設備製作
등 H/W 부문에만 주력하고, 소프트한 關聯
技術習得에는 소홀

〈CEDO 主體面〉

- 登錄業體위주의 지원육성으로 關聯組織이
취약하고 機能이 미흡
- 國內 엔지니어링市場중 登錄業體 40%, 未登
錄業體 40%, 其他 20% 占有
- 엔지니어링회사,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간
相互連繫가 未洽하여
- 研究成果의 實用化率이 低下
新製品 아이디어 6.2%, 新工程 아이디어
4.0%

－生産現場 隘路技術이 研究開發로의 連結 遲延

〈高級人力面〉

○技術人力의 有給不均衡 등으로 인한

－絶對人力의 不足으로 離職現象 深化

移職率：15.6%(技術士：9.9%，一般技術者：12.8~15.4%)

－企業의 人力養成 投資意慾 감퇴

○科學者(박사)와 技術者(기술사)의 構成比率이 불균형

－博士數：技術士 → 韓國, 1:0.4, 日本, 1.14

(5) 技術用役育成法改正試案으로 된 “엔지니어링振興法”(1990. 10. 22 公廳會附議案件)

〈指摘事項〉(i) 科技處의 上級法(基本法)인 科學技術振興法(圖-1 要參照)의 第1條 目的을 알면, 下級法인 技術用役育成法의 改正名稱에 “振興”이라는 用語를 쓸 수 없다.(立法上) (ii) 現在까지 各種 行政力을 總動員하여 1990. 1. 24 에는 “技術士制度檢討會議開催”하여 會議席上에서 用協의 P某氏가 現行 國家技術資格法과 技術用役育成法을 改正할 것 같으면 技術士會가 89年에 提示한 技術士法立法草案의 70%를 收容할 수 있다고 發言한데 대하여 筆者는 即刻 對句하기를 “立法理論에 無識하다고”(錄音되어 있음) 反駁한 것처럼 現今까지 科技處와 用協이 提示한 上記 5個件의 內容은 實定法에 無識(或은 輕視·無視等 閑視)하여 違憲立法은 試圖하고 있는지 그 心情을 現解할 수 없다.

1990年 10月 22日 公聽會에 回附案件으로 提示되었든 技術用役育成法改正試案으로 된 所謂 “엔지니어링振興法”의 主要骨材를 轉載한다.

〈주요골자〉

(註記：엔지니어링 振興法案, 1990年 10月 22日 公聽會附議案件이었으나, 公聽會에서 反對與論에 밑에 討議하지 못한바 있음)

○法의 名稱을 “엔지니어링振興法”으로 變更함

○엔지니어링의 定義를 包括的, 全般的인 概念으로 보완함.(案 第2條 第1號)

○엔지니어링業者의 범위에 엔지니어링專門會社 이외에 製造業, 建設業 등 自體內에 엔지니어링을 供給하는 엔지니어링專擔部署를 포함함.(案 第2條 第3號)

○科學技術處長官이 엔지니어링의 振興을 위한 基本計劃을 엔지니어링振興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함.(案 第3條)

○핵심 엔지니어링 技術을 重點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大學, 研究機關 등으로 하여금 單獨 또는 共同으로 研究開發事業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출연하도록 함.(案 第5條)

○엔지니어링業務에 종사하는 技術人力의 效率의 養成·活用施策을 수립·추진하도록 함.(案 第6條)

○科學技術處長官은 엔지니어링에 관한 技術情報 流通管理를 專擔할 機關을 指定하거나 設立하도록 함(案 第7條)

○엔지니어링 技術開發 및 開發技術의 實用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業者와 產·學·年間 連繫體制를 構築함.(案 第8條)

○科學技術處長官은 엔지니어링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던 것을 申告制로 轉換하여 營業을 自律化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하도록 함.(案 第9條)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發注하는 엔지니어링 事業에 대하여 主契約者 制度를 適應하고, 外國用役發注承認制를 申告制로 轉換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案 第11條)

○엔지니어링 代價基準의 細部適用基準을 民間團體의 엔지니어링振興聯合會가 정하도록 하여 엔지니어링대가를 현실화 함.(案 第14條)

○엔지니어링의 專門化 및 系列化를 유도하여 國際競爭力 提高와 엔지니어링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案 第15條)

○엔지니어링專門會社 및 엔지니어링專擔部署를 運營하는 자에 대하여 租稅·資金·購買 및

其他 支援을 하도록 함.(案 第16條)

○엔지니어링 成果品에 대한 評價를 實施하고 우수성과품에 대한 優待措置 根據를 마련함.(案 第11條)

○엔지니어링의 振興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源을 安定的으로 調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振興基金을 설치함.(案 第23條)

○民間次元에서 엔지니어링 振興을 위한 中樞的機關으로서 엔지니어링振興公團을 설립하여 집중육성함.(案 第24條)

○엔지니어링業者 相互間 財政的인 支援과 惠澤을 공유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第24條)

○엔지니어링業者 相互間의 權益擁護와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業種別 또는 技術分野別 엔지니어링振興協會와 이를 總括하는 엔지니어링振興聯合會를 設立하도록 함.(案 第27條)

나. 技術用役育成法改正案 科技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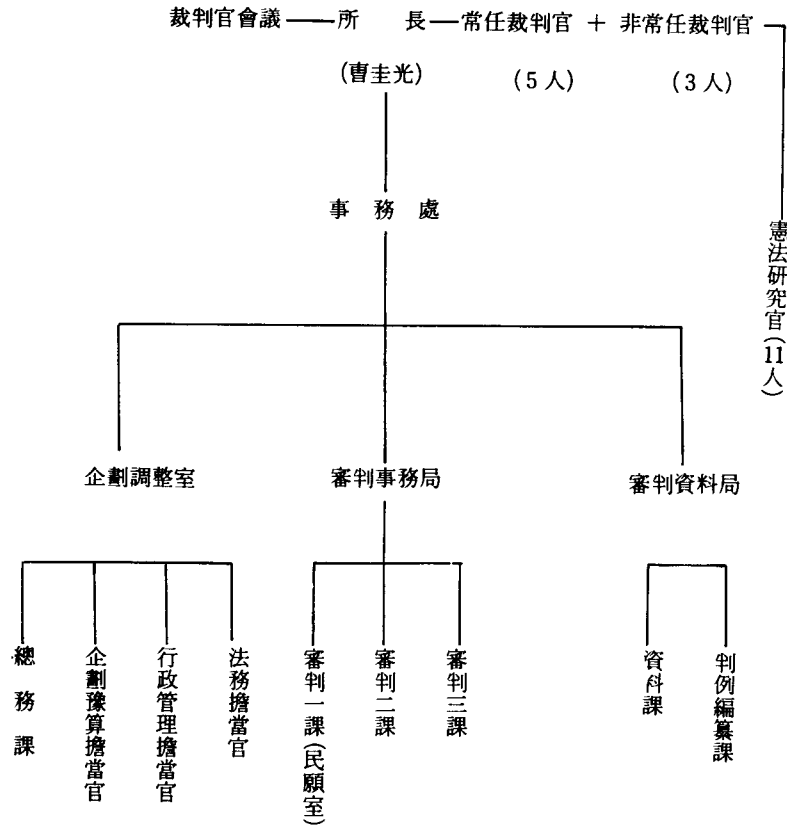
<主要骨格>

현 행	개정안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진흥법
제1조(목적)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1조(정의)
	제3조(엔지니어링진흥기본계획)
	제4조(엔지니어링진흥심의위원회)
	제1장 기술능력향상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6조(기술인력의 양성 활용등)
	제7조(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구축)
	제8조(연구기관등과의 연계)
	제3장 엔지니어링의 신고 및 수행 등
제3조(등록)	제9조(신고)
제3조의2(용역업자의 결격사유)	제10조(엔지니어링업자의 결격사유)
제4조(용역의 수행)	제11조(엔지니어링의 수행)

현 행	개정안
제4조의2(용역수주의 한도)	제12조(연합엔지니어링업체의 형성)
제4조의3(용역대가의 기준)	제13조(엔지니어링 수주의 한도)
제4조의4(산업설비용역의 육성)	제14조(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
	제15조(전문화 및 계열화의 조성)
제5조(금융지원)	제16조(조세·자금등 지원)
	제17조(엔지니어링성과품의 평가)
제6조(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제18조(엔지니어링업 신고 수리의 취소 등)
제6조의2(등록의 취소처분등을 받은 용역업자의 용역업무)	제19조(신고수리의 취소처분등을 받은 엔지니어링업자의 사업추진)
	제4장 엔지니어링의 해외 진출
	제20조(해외엔지니어링의 도급신고)
	제21조(해외진출의 지원)
	제22조(해외수주전담회사의 설립 등)
	제5장 엔지니어링진흥기금 등
	제23조(엔지니어링진흥기금)
	제24조(엔지니어링진흥공단)
	제25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6조(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제27조(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제6장 보 칙
제7조(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등)	제28조(자료등의 제출요청)
제8조(비밀누설금지)	제29조(비밀누설금지)
제12조(용역협회의 설립)	
제12조의2(권한의 위탁)	제30조(권한등의 위임·위탁)
	제7장 별 칙
제13조(벌칙)	제31조(벌칙)
제14조(벌칙)	제32조(벌칙)

그림 2 憲法裁判所 構圖

〈1989. 9. 5. 現在〉



註記：

- 1) 憲法裁判所法(1988. 8. 5 法第4017號)：全文76條 및 附則8條로 되어있다.
- 2) 關係條項：第25條(代表者, 代理人), 第38條(審判期間)……180日 以內…
第41條(違憲與否審判의 提請) ①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事件을 擔當하는 法院은 …
第26條(審判請求의 方式)… 違憲法律審判에 있어서는 法院의 提請書를 憲法裁判所에 提出함으로써 한다.……

현행	개정안
제 15조(과태료) 제 16조(벌칙적용에 있어서 의 공무원 의제) 제 17조(시행일) 부 칙	제 33조(과태료) 제 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의 공무원 의제) 부 칙

2.2 單一綜合立法推進忌避傾向에 관하여

(社)技術士會는 公式的으로 國家技術士法草案을 作成하여 其間 不斷히 立法推進하여 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1989年 10月 24日 開催된 科技處와 黨政協議會에서도 6個法案의 改正 및 制定을 合議했음에도 아직껏 技術士會要求를 沒殺하여 왔다. 그러나, 1990年 技術士會新年賀 社會에서 當時의 李祥義 科技處長官이 議員立法 推進을 두 李議員(民自黨)에게 勸誘하는 것을 그 會場에서 筆者가 귀담어 듣기는 하였으나, 前述한 5個案件에서 檢討한바 같이 全然 國家技術士法立法에 同贊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現在까지의 會議資料에서 立證된 바 있다.

그 要因은 다음과 같이 推斷한다.

(1) 用協은 違憲性에 無關하드래도 實定法인 技術用役育成法이라는 既得權은 固守하여 끝까지 單一綜合法을 忌避하고 있는 印象이 매우 濃厚하다.

(2) 民主輿論을 無視·輕視하여 自己主張대로 強行코져 하고 있다.(民主化에 逆行하는 限이 있드래도)

(3) 所謂 “엔지니어링 振興法”이라는 것이 違憲立法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成은 알고 있드래도 技術士會側을 無視(法律常識이 없다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4) 只今까지 엔지니어링振興法은 用協所管으로 立法推進하고 技術士法은 國家技術資格法처럼 資格法만으로 立法構想하는 듯한 印象이 진하다. 그것은 엔지니어링振興法草案에서 如實히 나타나 있다.

(5) 民主法治國家에서는 輿論調査가 매우 重要한 民主力테스트이므로 技術士會와 用協이 共同

으로 別添-Ⅱ와 같이 諮問調査(要調整)를 하여 技術士 五千餘名의 輿論과 用協立法主動當事者 十餘名의 意見과 對照하여 民主化된 輿論에 反映된 立法推進하시기를 勸告(用協側에) 하고 싶 다.

3. 憲裁(88年 9月設置된)의 違憲處理主要事例

3.1 憲法裁判所의 機構와 違憲處理概要

別添 圖-2와 같은 憲裁에서 그동안(90. 7. 17까지) 違憲法律審判 223件, 憲法所願審判 526件等 總 749件이 接受되 違憲決定 12件, 合憲決定 35件, 棄却 239件等 493件이 處理되었으며 256件에 審判繫留中에 있다.

紙面關係로 單一件의 事例로서 違憲決定處理된 社會的 큰 關心의 對象이었던 教育公務員法(1981. 11. 23 法第 3458號)의 違憲法定事例를 여기서 引用코져 한다.

3.2 教育公務員法第 11條 ①項의 違憲決定

1990年 10月 8日 憲裁에서 違憲으로 決定된바 있다. 그 條項은 다음과 같다. “第 11條(新規採用 등) ① 教師의 新規採用에 있어서는 國立 또는 公立의 教育大學·師範大學 其他 教員養成機關의 卒業者 또는 修了者를 優先하여 採用하여야 한다.”(要參照： 한국일보 1990. 10. 19 關聯記事)

4. 技術用役育成法 및 改正試案의 違憲性主張과 技術士資格과 業務는 單一綜合立法主張

4.1 技術用役育成法の 違憲條項에 관하여

이미 技術士會誌 1990年 8月號에 寄稿한 바와 같이, 1977年 7月 16日*부터 大統領令 第 8632號에서 記定技術士 制度(이 令 附則 第 2條)를 母法의 根據없이 行政當局이 便宜的·恣意的으로 令을 改定한 것은 儼然한 違憲이었으며,

繼續해서 1984年 12月 31日에 이르러서는 令第 11612號로 附表-4의 備考(欄)-2에(非法定用語로된) 高級技術者의 定義까지 作定하였다. 이것은 또 國家技術資格法 第5條[類似資格禁止]에 違背된다. 只今까지 有口無言無能(法上權威찾기에)했든 技術士들이 民主化 突風에 便乘해서 公式的으로 1990年 1月 24日 科技處招請會議에서 筆者가 違憲條項이 介在된 것을 처음 發說한 바 있었다.

4.2 技術用役育成法改正試案名題下的 “엔지니어링振興法”試案(MOST)

● 第一彈에서 지적한대로 資格과 業務가 統合된 單一法規가 14個法外에 科技處所管法인 原子力法이 있으니, 合計 15個法規가 現在 實定法으로 있다.

● 技術士는 憲法 第11條(衡平의 原則), 第22條(科學技術者의 權利保護)*, 第127條(科學技術人力開發)*等의 惠澤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他法과 同等한 立法制定公布로 國民的權利를 享受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用協이 草案한 “엔지니어링振興法” 自體를 立法構想하는 것이 違憲이 된다는 것을 銘記코져 한다.

※ 第8次改憲時 新設된 條項임

4.3 技術士資格과 業務는 單一統合法立法主張

여러번의 說明이 되풀이 되지만 技術士들이 合憲的으로 되는 單一法으로 立法草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9年 12月 22日 當會 電氣通信專門分會 朴慶鎮外 2人이 科技處長官을 被告로 告訴(內容은 高級技術者代替에 關한 行政告示無效)狀을 서울高法에 訴訟提起하여 아직껏 繫留中에 있는 現行法인 “技術用役育成法”의 改正推進은 法院의 確定判決時까지 할 수 없는 法的拘束下에 있으면서도 單一立法案을 내놓지 않은 心情을 立法常識上 理解할 수 없다. 可笑로운 일로 豫測되는 것은 90年 10月 22日 公聽會에서 政府當事

者가 技術士法草案(政府側)을 내놓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은 “技術士資格法”같은 것과 “엔지니어링振興法”과 두가지 草案을 臆心算이었던 것으로 推想된다.

서울特別市江南區에 所在한 두 團體가 北側(論峴洞)에는 “用協”이 자리하고 있고, 南側(驛三洞)에는 “技術士會”가 位置하여 恰似히 南北對決樣相을 띠고 있지만 南側(大韓民國)이 法的優越性과 合憲의 鬭爭으로 單一統合法立法推進이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5. 맺는말

本稿는 1990. 11. 9에 一旦 脫稿하였다가 安眠島核處理場事件으로 鄭根模長官이 辭任하게 되자, 그 論調를 바꾸어 쓰기 위해 再筆하게 된 것이다. 特히 科技處招請會議에서는 十分以上 時間의 發言機會를 주지 않아서 技術士會誌에 寄稿力說할 수밖에 없다.

6. 主要參考資料目錄

1. 法典, 玄岩社發刊, 1990年版.
2. 科學技術法令集(1988. 9. 20 現在) 科技處
3. 日刊新聞의 憲裁判決뉴스資料(各種)
4. 技術士會誌, 1990. 8. Vol. 23. No. 4, pp. 14~23. “技術士業務關聯現行法規의 違憲條項에 관하여”(金岫根) 1990. 11. 19 脫稿.

7. 附錄一 I “新任金鎮炫科技處長官에게 보내는 “技術士法立法에 關한 公開質問書”

尊敬하는 金鎮炫 科技處長官님 貴下 科技處長官就任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筆者는 金長官님께서 東亞日報 論說主幹으로서 金鎮炫카람을 愛讀한 讀者로서 其間 많은 共感과 高度로 緻密하고 洞察力을 具備하여 銳利한 筆鋒을 휘두른 記事에 每番 깊은 感銘을 받은 古稀가 멀지 않은 骨董品같은 技術士입니다.

더욱이 국민일보(1990. 11. 17. 22面 記事)의 就任所感에서 있다싶이 「安眠島事態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核廢棄物處分場問題는 勿論 原子力發電所建設等은 國民的 合意를 모아가며 處理 하겠습니다.」라고 한바와 같이 國家技術士法立法 推進에도 全體技術士의 總意를 받드리 單一統合法으로 立法推進되기를 切實히 仰望합니다. 其間, 科技處나 韓國技術用役協會側이 提案한 바 있었던 “所謂 엔지니어링振興法の 試案”은 違憲的 立法草案이라는 것을 認知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大端히 罪悚하지만 이 紙面을 통해 公開質問書를 쓰게 됨은 新聞記者出身으로 諒解하실줄 믿고 質問합니다.

(1) 現行法인 技術用役育成法에는 違憲條項이 介在되어 있고 이로 因해 現在 서울高法에 訴訟提起中에 있는 事實에 대하여 貴下의 코멘트를 바랍니다.

(2) (社)韓國技術士會가 單一統合法이고 合憲的 立法推進이 안될 경우에 憲裁에 違憲訴訟(現在 準備完了) 提起로 單一綜合法立法推進行政措置를 確定判決에 의해 받는 方向으로 努力中에 있음을 알립니다.

科技處는 任期가 短命長官으로 呼稱되고 있는 만큼 新任 金長官께서는 그 任期가 長期長官이 되도록 本會와의 協助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民主的 輿論을 傾聽하시와 敏腕論說主幹에서 敏腕長官이 되시기를 祈願해마지 않습니다. 余不備禮

(社)韓國技術士會內技術士法立法推進特別委員會 (前任)幹事 技術士 金岫根 올림

附錄-Ⅱ. 國家技術士法立法草案에 必要한 設問가드案의 一部

參考事項: 韓國技術用役協會 88-2로 發刊된 “엔지니어링産業의 現狀과 特來像-日本의 調査研究報告書-”가 日本의 엔지니어링振興協會가 1984年度에 設問調査로 構成된 冊으로 筆者가 用協委囑에 의해 翻譯한 것이니 一讀을 바란다.(設問實施資料統計를 收錄함)

(1990. 11. 19)

〈附錄-Ⅱ〉

設問가드(案) 90年 10月 日
國家技術士法立法草案에 必要한 輿論調査의 一部로서 다음과 같은 設問에 積極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者: 分野 _____ 年齡 _____

(要參照: 技術士誌 1990. 2 Vol. 23, No. 1)

設問(○, ×型 및 單答型)

A. 法規關聯事項

A.1. 現行國家技術資格法 및 同施行令에 關해서 다음 問答에 적어주시요.

가. 滿足하다. YES _____ NO _____

나. 未洽하므로 改備補完이 必要하다.

YES _____ NO _____

다. 廢止하고 代替되는 新法이 必要하다.

YES _____ NO _____

라. 新法制定 必要性 _____

A.2. 新法草案(國家技術士法)에 反映될 主要한 法條項을 指摘하시기 바랍니다.

가. 技術士의 權限強化 및 活用度提高

YES _____ NO _____

나. 辯護士·專門醫·建築士와 거이 同等한 法的·社會的 地位保障

YES _____ NO _____

다. 技術仲裁(Arbitration) 技術士共濟事業이나, 信用保證業務事業같은 事項

YES _____ NO _____

라. 別添된 立法案外에 希望하는 條項의 立法化의 具體的 事項

(1) _____

(2) _____

(3) _____

A.3. 現行技術用役育成法 및 同施行令에 關해서:

가. 技術士活用に 未洽하고 一部の 分野에 過重한 感이 있다.

YES _____ NO _____

나. 改備補完되거나 新立法에 代替 或은 統合되어야 한다.

YES _____ NO _____

다. 醫療法이나 建築士 或은 辯護士法처럼 資格과 業務는 한개의 統合된 法에 있어야 한다.

YES _____ NO _____

라. 先進國의 市場開放對策으로서도 育成法으로는 不充分未洽하다.

YES _____ NO _____

마. 違憲條項이 있으므로 改廢가 不可避하다.

YES _____ NO _____

A.4. 先進國의 Professional Engineer 라 함은 法的受任關係業務를 爲始하여 訴訟代理人(agent), 仲裁人(Arbitrator) 等까지 하는 技術者(Engineer) 를 말하는데 다음 問答에 적어주세요 (現在까지 誤認되고 있는 實情이다.)

가. 日本의 技術士를 “Kijitsushi”(きづし)로 呼稱하되 先進國의 P.E와 區別하고 있는 點을 妥當하다고 보는가

YES _____ NO _____

나. 韓國의 技術士를 Professional Engineer 로 英譯할 때, 法規上으로 妥當한 翻譯이 아닐 것이다.

YES _____ NO _____

다. 이미 公開된 國家技術士法草案에는 題目의 法條項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는가

YES _____ NO _____

A.5. 技術士人力의 効率的 活用과 技術能力의 向上 圖謀를 위한 人力需給基本計劃 및 統制의 必要性 有無에 關係서:

가. 分野別로 過多 或은 過少한 人力供給이 되어 있다.

YES _____ NO _____

나. 過多分野를 指摘하십시오.

YES _____ NO _____

다. 過少分野를 指摘하십시오.

YES _____ NO _____

라. 認定技術士 或은 類似資格을 附與하고 있는 高級技術者가 登錄時(科技處) 必要한 分野 有無

YES _____ NO _____

있으면 要指摘分野: _____

B. 技術士業務關聯事項

B.1. 技術士業務로서의 就業狀況調査(○: 該當)

가. 政府 或은 政府事業公共機關: _____

나. 教育 및 研究機關 _____

다. 技術用役業體

常勤: _____ 非常勤: _____ 顧問: _____

라. 産業體 및 一般商社

마. 建設業體

바. 其他

B.2. 技術士의 年間所得狀況

技術士業務로서 取得되는 年間平均個人所得 (課稅額含)은 다음의 어느 것인지 該當되는 곳에 ○印 하여 주세요.

가. 500 萬원 未滿 _____

나. 1,000 萬원 未滿 _____

다. 2,000 萬원 未滿 _____

라. 3,000 萬원 未滿 _____

마. 3,100 萬원 以上 _____

B.3. 技術士業務遂行上 必要한 信用保證·信用貸付·融資 等은 現在 어떻게 解決하고 있는가?

가. 高利債(私債)를 쓰는 경우가 있다.

YES _____ NO _____

나. 擔保融資(會社 或은 個人財産)

YES _____ NO _____

다. 政府 或은 共同機關과 契約締結時 債券讓渡 (對銀行)로서 先貸付后 還拂하고 있다.

YES _____ NO _____

라. 政府發注技術用役受注時 政府의 先受金으로 充當하고 中間既成拂로 一部를 解決하고 있다.

YES _____ NO _____

(以下未完)